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7 선고 2020가합5077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

담당변호사 정필규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

담당변호사 고경희, 권오준

변 론 종 결 2021. 5. 7.

판 결 선 고 2021. 8. 27.

## 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와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 사이에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 발행 주식 1,050,000주(이하 '제1 주식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2. 1. 체결된 양도계약(이하 '제1 양도계약'이라 한다)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 제1 주식 중 300,000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.

피고와 주식회사 E(이하 'E'라 한다) 사이에 D 발행 주식 500,000주(이하 '제2 주식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2. 1. 체결된 양도계약(이하 '제2 양도계약'이라 한다)을 취소한다. 피고는 E에 제2 주식 중 125,000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.

## 이 유

### 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D의 실질사주인 F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135 판결로 확정된 약정금 3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인 제1, 2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바, 피고는 제1, 2 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와 E에 제1, 2주식에 관한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### 2. 판단

가. 제1, 2 양도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

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라 할 것인데,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제1 양도계약은 C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, 제2 양도계약은 E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채무자인 F의 법률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다.

따라서 제1, 2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다.

나. 원상회복청구부분에 대하여

제1, 2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와 전제가 다른 원상회복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,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오덕식, 판사 명선아, 판사 이유섭